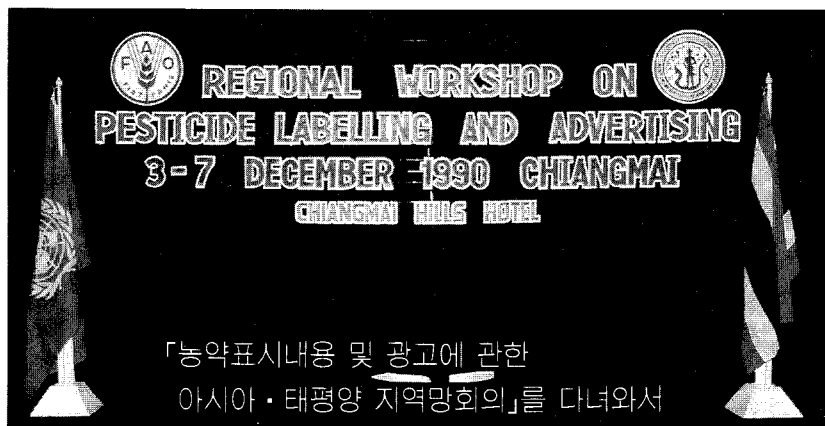


농약표시내용(라벨)은 분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강 충 길 농약연구소 농약생물과(農博)

농약표시내용(라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약의 표시 내용은 원제회사나 제조회사의 연구와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과 지도 및 충고를 농약구입자나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약표시내용은 농약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농약명·품목명·유효성분 함유량·적용 병해충명·약효보증기간·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농약표시내용 및 광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망 회의〉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하에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던 바 토의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태국에서 받은 인상

인도지나 반도의 중앙부에 자리잡은 태국은 면적이 514,000km²이고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북부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이다. 차오프라야강(통칭 메남강)이 흐르는 중부지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쌀 생산지이다. 북부산림지대에서는 티크(Teak)가 생산되고 남부에서는 주로 고무가 생산된다.

국민의 93%가 불교도인 만큼 불교문화가 국민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수많은 절과 수수한 승려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태국의 남자는 일생에 한번은 최소한 3개월간 불문에 들어가서 수행하여야 한다. 새벽에 노란 법의 걸친 수행자의 탁발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국토가 남북으로 1,650km로 긴 태국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기온차가 있다. 한여름은 4~5월이고, 이때 방콕의 기온은 38℃ 정도. 가장 시원하다는 12월의 평균기온이 26℃이다. 6~10월의 우기에는 스킨(열대지방 특유의 세찬 소나기)이 많고 건기는 11~5월이며

많은 관광지가 산재하고 있다.

회의가 개최된 치앙마이(Chiang Mai)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800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3세기말 만라이 왕에 의해 창건된 유서깊은 이 고도는 인구 백만이 넘는 태국의 제2의 큰 도시이기도 하다. 여기 저기에 많은 사원이 있으며, 나이트바자, 우산마을로 유명한 보상, 또한 은제품으로 유명한 산캄펑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 회의목적 및 참가국

이 회의의 목적은 FAO가 권장하는 농약표시내용의 지침 및 그림문자(Pictogram)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농약표시내용과 광고현황 및 그 조화를 모색하면서 농약광고를 개선하고, 참가자들간의 경험을, 문제점 및 장애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참가국은 24개국이었으며 각국의 대표를 포함하여 109명이 참석하였다. 10개국의 농약공업협회,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미국환

경보호청(EPA), 독일기술협력기구(GTE), 농업연구개발 국제협력센터(CIRAD), 국제소비자보호연맹(IOCUC) 및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서도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필자가 업서버로 농약공업협회에서 2명, (주)한농에서 2명 그리고 (주)경농에서 1명이 참석하였다.

3. 개회식과 성명발표

토의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태국 치앙마이 주지사인 파이랏 데차린(Dr. Pairat Decharin)씨가 회의개최지로 치앙마이를 선택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자 모두에게 좋은 체류가 되기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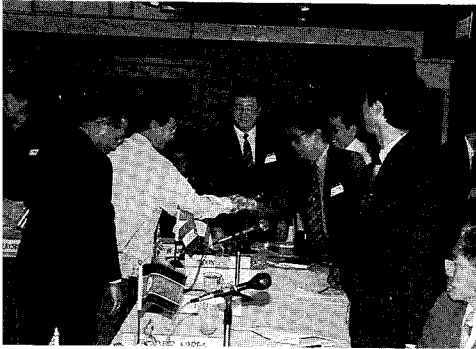
FA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운영위원장인 비베카난단(T. Vivekananthan)씨가 회의주체국인 태국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농약사용지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농약표시내용은 간단하고 분명해야 하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광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회인사는 태국 농협회장인 추안 립파이(Chuan Leekpai)씨가 하였고, 본회의의 의장에는 태국의 몬트리 루마콤(Montri Rumakom)씨가, 부의장에는 쿡 아일랜드의 푸나 사무엘(Poona Samuel)씨가 피선되었다.

이어서 국제기구의 성명발표가 있었는데, FAO에서는 『농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농



◀ 각국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24개국에서 109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가진 상건례(사진 중앙이 필자)

약의 표시내용과 농약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농약표시내용을 창출하고자 수년간에 걸쳐 농약사용지침(The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을 홍보하고 있고, 윤리적인 광고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발표했다.

WHO에서는 『농업에 있어서 농약사용의 필요성을 본기구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농약의 오용시 인체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농약표시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모든 국가가 동일하나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정한 내용은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지역간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는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농약안전사용책자(Agro-Pesticides : Their Integrated Management and Application)의 발간을 소개하였고,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서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농약사용지침의 이행을 촉구하고, 본회의의 목적을 지지하면서 농약표시내용과 농약광고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본 연맹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다.

기타 여러 기구에서도 이 회의의 목적을 지지하고 FAO의 농약사용지침의 이행을 촉구했다.

4. 농약표시내용 지침

1985년 3월 이태리 로마에서 제정된 FAO의 「농약표시내용 지침(Guideline on Good Labelling Practice for Pesticides)」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는 서언, 농약표시내용의 정의, 포장용기의 정의, 사용방법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제2부에서는 농약표시내용의 구성과 배치, 승인검토, 특수농약(정

원 및 가정용 농약)의 승인검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3부에는 독성 및 위해성의 분류, 경피독성, 흡입독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농약표시내용을 준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도움을 주고, 그 내용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최종 사용자가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지침 내용 중에는 농약표시내용을 최종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FAO의 농약표시내용의 지침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작은 농약용기에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많은 내용을 인쇄할 때 활자크기가 또한 문제이며, 인쇄가 된다고 해도 읽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수개 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수개 국어로 동시에 인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약효보증기간 보다는 제조

일자 사용을 추천하는 FAO의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농약표시내용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나 국가간의 특정한 내용은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더구나 농약관리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본지침의 내용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5. 사례연구와 그 결론

농약표시내용을 FAO의 지침대로 만들고자 가상의 농약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례연구가 있었다. 참가국을 4팀으로 나누고 각팀을 그룹 A와 B로 구분하여 그룹 A는 국가대표, 그룹 B는 기업대표로 구성하였다. 그룹 B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그룹 A가 검토 승인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농약표시내용의 지침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으나 지침내용에 있어서 해석상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돈이 야기되었다. 농약표시내용은 많은 훈련과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최종사용자의 수준과 지역적인 농업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이다. 농약표시내용의 필수적인 원칙은 최종사용자, 소비자 및 환경안전성에 맞춰져야 하고, 그 초안을 만드는 제조회사와 검토·승인하는 정부기관과의 시각차는 있지만 제조회사나 정부기관 모두 농약표시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농약표시내용은 분명하고, 간결해야 하며,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최종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약표시내용에 대한 권고는 『농약표시내용에 대한 많은 조화가 이루어졌으나 지역별 국가간의 농약표시내용에 대한 기준채택이 필요하여 더 많은 화합이 있어야 되겠고, 농약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술적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농약표시내용에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했다.

6. 격론별인 농약광고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허위광고 등의 금지’ 및 ‘광고의 방법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를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농약공업협회 내에 농약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있어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FAO의 농약광고에 대한 규정은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 규약(The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s)>의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농약광고현황에 대한 각국의 보고가 있었는데 FAO의 행동규약 제11조에 대해 참가국 24개국중 12개국이 농약광고를 규제하고 있고, 14개국의 농약공업협회에서는 자율적인 심의요령을 가지고 있었다. 또 모든 국가들이 농약광

고와 홍보를 위해 훈련을 받은 숙련된 사람을 원하고 있고, 농약표시내용을 사용자가 잘 읽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한편, 농약판매시 사은품 증정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사은품증정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즉, 농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비누나 방제복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으며, 선물을 준 다하여 불필요한 농약을 더 사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일부 몇몇 국가에서는 농약판매를 증진하고자 자극적인 선물공세를 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농약 안전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선물토록 권장하며, 독성이 강한 농약을 광고할 때는 정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농약광고의 안전성(제11조, 제1항 8호)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농약안전에 관한 광고는 허용될 수 없으며, 농약광고시 “안전”, “무독”, “무해”와 같은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

론이었다. 농약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여기에 적합한 지침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본 기구의 농약등록전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농약광고와 홍보에 관한 지침개발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7. 그림문자의 필요성

FAO가 그림문자(Pictogram) 사용을 추천하는 배경은 농약품목 수가 다양해지고, 사용자의 지적 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며 농약 표시내용을 잘 읽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적절한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1984년 FAO의 농약등록 전문가그룹에서 그림문자를 추천하였고, 이를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서 42개국 약 1,000명의 농부 및 작업인부로부터 엄선·선정하여 창안된 것이 이 그림문자로서 저장, 사용, 권고, 주의의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저장 그림문자는 어린이 손에 농약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잠금장치’의 도안이며, 사용 그림문자는 농약살포에 대한 것이고, 권고 그림문자는 장갑, 장화,

그림1. 그림문자의 사용예



보안용 안경, 마스크 및 방독면 착용, 살포후 기구세척에 대한 것이다. 주의 그림문자는 가축과 물고기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표기법은 흑백으로 인쇄하며 농약표시내용 하부에 배치하고, 크기는 15×15mm이나 7×7mm이하는 불가하며 각각의 그림문자는 설정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림문자의 설정개수는 12개까지이며, 맹독성농약은 주의사항 문구와 함

께 칼라밴드 증상에 해골그림을 설정토록 했다. 칼라밴드는 맹독서는 적색, 고독성은 황색, 보통은 청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다.

농약표시내용(라벨)은 농민(최종사용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농민은 농약표시내용을 자세히 읽고 숙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림문자 사용에 대한 검토를 제언하는 바이다.